

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기 대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김기대 의원입니다.

지난 2월 4일 본 의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제정안의 취지는 반환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등 서울시 관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반환공여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고를 예방하고,

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후속조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·안전·재산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서울시와 환경부, 주한미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,

본 조례안은 적용범위를 서울시 내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및 반
항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로 규정하고, 시장이 주한미군
기지 등에서 환경오염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조치를 취
하도록 법적으로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,

자치구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이 지체 없이 사고내
용을 서울시, 환경부 및 SOFA 환경분과위원회 등에 우선으로 신속
히 통보하고, 48시간 이내에는 서면 통보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
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에 따른 피해를 원
인자인 미군이 아닌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이 감내해야 하는 지금의 불
합리한 제도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견인차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
라고 확신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주시고, 모쪼록
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
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